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원무부서장

제 목 영양기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개정 서식 적용 요청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259호 (2014.9.1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영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영양급여(선별급여) 도입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등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.
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서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영양기관은 불임의 개정 서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, 서식 제6~12호

※ 불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14 (2015.01.12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